

영등포구의회
제149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9. 10. 26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9. 10. 16.
- 제안자 : 영등포구청장

■ 개정(제안) 이유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를 조정하고, 아울러 위원의 연임규정을 1회로 제한하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분 없이 규정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각 협의체의 설치목적, 기능 및 구성을 알기 쉽도록 구분하여 명시함(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)

-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“10인 이상 20인 이하”에서 “10명 이상 30명 이하”로 조정하고,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협의체의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7조)
-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규정을 명시함(안 제9조)
- 대표협의체 위원은 구청장이,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할 수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규정을 정비함(안 제10조)
- 기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(안 제1조, 제4조, 제8조, 제9조 등)

■ 관련법규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3 및 제1조의4

■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서대문구, 마포구, 금천구, 송파구, 노원구, 강남구 등

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개정된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확대하고, 기타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·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

-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분 없이 규정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각 협의체의 설치목적, 기능 및 구성을 알기 쉽도록 구분하여 명시하였고(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)
- 각 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“10인 이상 20인 이하”에서 “10명 이상 30명 이하”로 조정하고,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협의체의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(안 제4조 및 제7조)
- 위원의 임기는 종전과 같이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규정을 신설하고(안 제9조)
- 위원의 해촉관련 규정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구청장이,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.(안 제10조)
- 그리고, 기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(안 제1조, 제3조, 제8조, 제9조 등)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9. 10. 26.

보 고 자 : 이 남 식

【참고자료 : 관련 법령】

관 련 법 령

■ 사회복지사업법

[시행 2009.12.1] [법률 제9766호, 2009.6.9, 일부개정]

제7조의2 (지역사회복지협의체) 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, 사회복지·보건의료 관련 기관·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.

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
3.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
4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5.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. <개정 2007.12.14>

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<개정 2008.2.29>

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사회복지위원회"는 "지역사회복지협의체"로 본다.

[본조신설 2003.7.30]

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[시행 2008.11. 5] [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, 2008.11. 5, 일부개정]

제1조의3 (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08.11.5>

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,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1.5>

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04.9.6]

제1조의4 (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(이하 "실무협의체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08.11.5>

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 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08.11.5>

1.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관·단체의 실무자
3.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4. 공익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추천한 자

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04.9.6]